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5
----------	------

제출일자 : 2015. 3.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의 임기와 위촉기준을 명확히 하고, 안전제출 및 심사기준을 정하여 내실있는 규제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구성, 위촉직 위원의 위촉기준과 임기를 규정(제3조)

나. 위원회 간사의 보직을 규정(제6조)

다. 조례·규칙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규정을 신설(제6조의2)

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및 공표하고 이에 대한 자체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규정을 신설(제6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25조

(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사 : 원안동의

(4)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2. 23. ~ 3. 1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2인”을 “위원장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군수가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정책사업단장, 법무규제개혁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달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각자 위원회를”을 “위원회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업무담당”을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의 사전 심사) ①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하려는 소관 부서에서는 규제유무, 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제6조의2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것인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제출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한 후,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4. 근거법령 등			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 제의 내용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가.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 다. 규제의 목표 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나. 기술수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가. 기존규제의 대체여부
- 나. 규제 외 다른 방법으로 목적달성 여부
-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 여부
-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가. 규제의 비용분석
- 나. 규제의 편익분석
-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가. 시장경제제한 요소 포함 여부
- 나. 기업활동저해 요소 포함 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 가. 규제기준·절차의 명확성 등
-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가. 규제집행을 위한 조직·인력·예산 판단
- 나. 기존조직·인력·예산으로 대체가능 여부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Ⅲ. 기타 기재사항

- 1. 사후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제시
- 2.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2호 서식]

자체규제심사서

1. 규제사무명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4. 근거법령 등								
5. 심사일시								
6. 심사참여자								
7. 규제영향분석서 의 평가요소별 심사의견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 5. 경쟁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 - 6. 규제내용의 객관성·명료성 -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							
8. 종합심사의견								
9. 심사참여자의 주요이견(요약)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u>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u></p>	<p>제3조(구성) ① ----- <u>위원장을</u> ----- ----- -----.</p>
<p>②위원장은 <u>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u></p>	<p>② ----- <u>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군수가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u></p>
<p>③위원은 <u>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u></p>	<p>③ <u>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정책사업단장, 법무규제개혁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 2. <u>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u> 3. <u>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 4. <u>달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u> 5. <u>그밖에 위에 준하는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p>④제3항의 <u>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p>⑤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u>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p>⑤ <u>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를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간사) ① (생략)</p> <p>②간사는 <u>규제개혁업무담당</u>이 된다.</p>	<p>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u>-----.</p>
<p><신설></p>	<p><u>제6조의2(안건의 사전 심사) ① 조례·규칙 등을 제정·개정하려는 소관 부서에서는 규제의 유무, 정도 및 영향에 관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u></p> <p><u>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u></p>
<p><신설></p>	<p><u>제6조의3(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u></p> <p><u>① 제6조의2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것인 경우에 소관 부서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제출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한 후,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p>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행정규제 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규제 기본법 제25조 제5항(구성 등)**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행정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위원회의 구성 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